인지세 관련 안내

▶인지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**부동산의 소유권 이전(분양및 전매포함) 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**하여야 합니다.
(※인지세는 재산권에 관련한 계약서 작성 시 첨부하게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이며, 수입인지는 수수료, 세금을 냈다는 증빙으로 사용됩니다.)

▶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
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▶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이하 15만원, 10억원 초과 35만원)를 납입하신후
정부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❶ 홈페이지 접속

전자수입인지사이트
(www.e-revenuestamp.or.kr)
또는 네이버 검색창
"전자수입인지" 검색

❷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❸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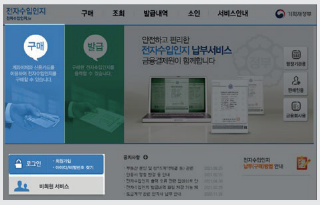

❹ 구매 – 납부정보입력

1. 용 도 : 인지세 납부
2.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3. 금 액 : 기준금액
4. 건 수 : 1건
5. 확인 및 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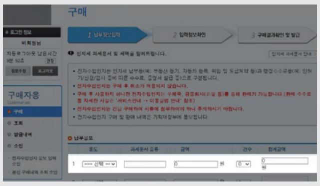

❺ 출력 – 출력 전 테스트 출력 必

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
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상태 등을
확인하시기 바랍니다(재발행 불가)

❻ 소인 – 계약당일까지 완료 必

정부수입인지 정보 입력 소인 창에서
아래 내용 기입 후 완료
① 고유번호 : 16자리(전자수입인지 참조)
② 발급일자 : (예) 20210823